

# 보도자료

# चित्रा, च्युक्तिक्षेत्र! त्युडिटे देण्य प्रम

보도 일시	2022. 5. 17.(화) 조간	배포 일시	2022. 5. 16.(월) 10:00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	책임자	과 장 고영호(02-2100-2660)
	자산운용과	담당자	사무관 윤우근(02-2100-2661)

#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계획

#### 주요 내용

- □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연금을 운용함에 있어, **원리금보장 상품 등** 예외적 상품만 **적립금의 100%**(전액)**까지 편입**할 수 있으며, **주식형펀드 등 여타 금융투자상품은 최대 70%까지만 편입**이 가능합니다.
  -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(디폴트옵션)가 시행되는 바, 디폴트옵션 상품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%(전액)까지 편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합니다.

    - ①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등을 통해 안정성 등이 평가된 디폴트 옵션 상품 중 사용자-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 제시됨
    - ②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적립금內 **원리금보장 상품 등 비중이 30%를 하회**할 경우, **펀드형 디폴트옵션**은 **작동될 수 없는 상황**이 발생
    - ③ 예·적금 중심 운용(약 90%)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제도 취지 감안
- □ 아울러, 제도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, **퇴직연금 수익률 제고**를 위한 여타 운용규제 개선사항도 추가 검토·추진\*할 예정입니다.
  - \* 3분기 유관기관 합동 TF를 구성하여 관련 규정 등 개정 검토

### 1 추진 배경

- □ 확정기여형(DC)\*·개인형(IRP)\*\*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(이하 "디폴트 옵션")를 도입한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(이하 "퇴직급여법")」 개정안이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  - \* DC: Defined Contribution / \*\* IRP: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

- ※ 퇴직급여법상 디폴트옵션 주요 내용
- (도입배경) 가입자의 무관심 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90%가 낮은 금리의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됨에 따라, 低수익률 상황\* 지속
  - \* 퇴직연금 수익률 최근 5개년('17~'21) 평균 1.94%
  - □ 수익률 제고를 통한 가입자(근로자) 수급권 보장 등을 위해, 미국·영국·호주 등 연금 선진국이 旣도입한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\*
    - \* 미국('06)·영국('12)·호주('13)의 디폴트옵션은 연평균 6~8%의 높은 수익률 기록중
- (적용절차) 가입자의 운용지시 없이 4주 경과 → 디폴트옵션이 적용됨을 가입자
  에게 통지 → 통지후 2주 추가 경과시, 디폴트옵션으로 운용
- 디폴트옵션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, 금융위원회는 고용노동부 ·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올해 초부터 퇴직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준비해 왔습니다.
- 지난 5월 3일 고용노동부가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이어,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금일 변경예고 하였습니다.

### 2 주요 내용

- **(1) 디폴트옵션 관련**(개정안 제12조)
- □ (현황) 퇴직급여법령상 원리금보장 상품 등 예외적인 상품만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%까지 편입이 가능합니다.
  - 한편, 주식형편드 등 그 밖의 금융투자상품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최대 70%까지만 편입이 허용되어 있습니다.

#### < 운용방법별 예시 및 최대 편입비중 >

운용방법	예시	최대편입비중
① 원리금보장상품 등	은행 예·적금, RP, 국채, 통안채, 주금공MBS, 채권형·채권혼합형펀드 등	100%
② 그 밖의 운용방법	주식형·주식혼합형펀드, 공모ELS 등	70%

<sup>\*</sup> 주식, 투자비적격등급 채권, 사모ELS 등은 편입 금지

- □ (문제점) 현행 규정 하에서는 펀드형 디폴트옵션의 경우, 가입자가 희망 하더라도 적립금의 최대 70%까지만 편입할 수 있고, 나머지 30%는 여전히 수익률이 낮은 예·적금으로 운용해야만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.
  - □ (개정안) 다음의 사항들을 감안하여,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%(전액)까지
    편입 가능한 운용방법에 디폴트옵션을 추가하는 내용을 고시하였습니다.
    - ①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(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 참여 예정)\* 심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통해 안정성 등이 평가된 디폴트옵션 중 사용자-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 제시된다는 점
    - ② 현행 제도 하에서는 적립금內 원리금보장 상품 등의 비중이 30%를 하회할 경우, 펀드형 디폴트옵션은 작동될 수 없다는 점
    - ③ 현재의 예·적금 중심 운용구조(약 90%)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디폴트옵션 제도의 도입취지
- (2) 기타사항(개정안 제8·9조) : 증권금융회사 예탁금도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될 수 있는 기준 마련
- □ (현황) 최근 고용노동부는 퇴직급여법 시행령을 개정(2022년 4월 13일)하여,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편입할 수 있는 원리금보장 상품\*의 하나로 증권 금융회사 예탁금을 추가하였습니다(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라목).
  - \* 현재 은행 예·적금, 국채, 통안채 등을 퇴직급여법상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인정
  - 퇴직급여법령상 퇴직연금 가입자의 **노후자금 보호** 등을 위해 원리금 보장상품 제공기관에게 **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건전성 등\***을 요구하고 있고, 금융위원회는 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.
    - \* 투자적격 이상 신용등급, 일정수준 이상의 자기자본비율 등
  - 따라서,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기관으로 금번에 추가된 **증권금융회사**에도 **가입자 보호**, 규제 형평성 등을 위해 유사한 요건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
  - □ (개정안) 기존 원리금보장 상품 제공기관에 적용되는 신용등급, 자기 자본 비율 등의 요건이 증권금융회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.

# 3 향후 계획

- □ 동 개정안은 규정변경예고, 금융위원회 의결(6월말) 등을 거쳐, **7월 12일**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.
- □ 금융위원회는 디폴트옵션 제도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, 고용노동부·금융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시장과 긴밀히 소통·협의하고 있습니다.
  - 특히, 3분기 중으로 유관기관 합동 TF\*를 구성하여, 퇴직연금 관련 운용규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, 퇴직연금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운용규제 개선방안\*\*을 검토할 계획입니다.
    - \*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퇴직연금사업자 업권별(은행·보험·증권) 협회
    - \*\* [例] 자산별 최대 편입비중 조정, 편입 가능 자산범위 확대 등

